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



관세청

Korea Customs Service

목 차

납세자 등 국민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

① 면세품 교환절차 간소화('26. 7. 1. 시행)	p.1
②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 제한 완화('26. 7. 1. 시행)	p.2
③ 가상계좌 납부 가능 금융기관 확대로 납부 접근성 향상('26. 6. 1. 시행)	p.3
④ 개인 자가사용물품 등 반품 시 고지 취소하는 절차 마련('26. 4. 6. 시행)	p.4

수출입기업 지원 등을 통한 원활한 무역환경 조성

⑤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26. 7. 1. 시행)	p.5
⑥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26. 7. 1. 시행)	p.6
⑦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수수료 폐지('26. 3. 20. 시행)	p.7

공정하고 투명한 관세행정 제도 구축

⑧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도입('26. 8. 15. 시행 예정)	p.8
---	-----

엄정한 관세국경 관리를 통한 대외 경제질서 확립

⑩ 승객예약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26. 7. 1. 시행)	p.9
⑪ 소량화물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도입('26. 4. 1. 시행)	p.10

1 면세품 교환절차 간소화

(보세산업과, 042-481-785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면세품 교환 절차 ○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로 반입하여 교환을 원하는 경우,	☐ 면세품 교환 절차 간소화 ○ <u>면세범위(\$800) 이내의 면세품을</u> 국내로 반입하여 <u>동일물품</u> 으로 교환을 원하는 경우,
- 입국 시 세관에 휴대품신고 필수	- 입국 시 세관에 휴대품신고 <u>생략</u>
- 재출국 시에 교환물품 수령 가능	- 국내에서 <u>면세점 방문, 택배·우편을 통해 수령</u>
	○ <u>면세범위 초과하는 면세품은</u> <u>자진신고 후 세금 납부한 경우</u> 국내에서 교환 가능 * 교환가능기간 등은 면세점 문의 필요

< 사 례 >

개정전	A씨는 선물용으로 구매한 면세품(\$ 200)을 동일 물품으로 사이즈로 교환하려고 하였으나, 교환을 하려면 입국 시에 휴대품신고하여야 하고 교환된 물품을 재출국 시 수령할 수 있어 불편하여 교환을 포기하였다.
개정후	A씨는 선물용으로 구매한 면세품(\$ 200)을 동일 물품으로 사이즈 교환하는 경우에는, 일반 온라인쇼핑몰 구매 물품과 동일한 방식으로 택배·우편을 통하여 교환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게 되었다.

- ☐ **【기대효과】** (해외여행객) 해외여행 시 구매한 면세품을 국내에서 간편하게 교환할 수 있게 되어 면세점 이용 편의 제고
 (면세업계) 면세품 교환 관련 민원 감소 및 면세점 이용편의 제고에 따른 이용률·매출 향상 기대

- ☐ **【시행일】** '26. 7. 1. 시행(「보세관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43조 개정)

②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신청기한 및 방식 제한 완화

(통관검사과, 042-481-7904)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검사비용 신청방법(제10조) ○ 검사가 완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 신청 <신설> ○ 전자통관시스템(유니패스)을 통해 신청 <신설>	☐ 신청기한 연장 및 신청방법 다변화 ○ (현행과 같음) - 전산장애 등 <u>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신청기한의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60일에 한하여 연장 가능</u> ○ (현행과 같음) - 외국인·고령자 등 전자통관시스템 사용이 어려워 <u>전산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신청 가능</u>

< 사 례 >

개정전	• A사는 전산시스템 오류로 세관 검사비용 지원 신청 서류를 60일 내 확보하지 못하여 신청기간이 도과하였다 • 70대 B씨는 세관검사비용 지원제도는 알고 있었지만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한 신청 절차가 어려워 신청을 포기하였다
개정후	• 전산장애 등으로 적기에 신청을 못하거나 전자통관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검사비용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 **【기대효과】** 재난피해 화주 및 전산신청이 어려운 화주를 위해 신청기한 연장 및 오프라인 신청을 허용함으로써 지원 사각지대의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여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에 기여

☐ **【시행일】** '26. 7. 1. 시행(「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10조 개정)

③ 가상계좌 납부 가능 금융기관 확대로 납부 접근성 향상

(세원심사과, 042-481-787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 ○ 여행자·우편·이사화물 등 부과 고지 대상 물품의 납세 편의를 위해 농협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가상계좌 납부 서비스를 운영해 왔음	☐ 가상계좌 납부기관 확대 ○ 기존 농협 중심의 서비스를 확대하여 우리은행 및 우정사업본부를 추가 참여기관으로 운영하여 납부 편의 제고

< 사 례 >

개정전	가상계좌로 납부하고자 하는 납세의무자는 농협은행 계좌로만 납부할 수 있으므로 농협은행이 아닌 타행 이체의 경우 이체 수수료가 발생하였다
개정후	가상계좌 발급 금융기관의 확대(농협은행→농협은행, 우리은행, 우정사업본부)로 납세의무자의 타행 이체 수수료를 절감하게 되어 납세자 편의성이 제고되었다.

☐ **【기대효과】** 가상계좌 납부기관 확대로 납세자의 편의성 향상 및 비용 절감

☐ **【시행일】** '26. 6. 1. 시행

4 개인 자가사용물품 등 반품 시 고지 취소 절차 마련

(세원심사과, 042-481-7871)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면세범위 초과하는 면세품 환불 시 환급 절차 ○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면세품을 세관에 자진 신고한 후 면세품 환불 시 납부기한 전이라도 세금을 납부하여야만 환급을 받을 수 있었음	□ 면세품 환불 시 부과 취소 절차 도입 ○ 여행자가 세관에 자진 신고한 면세품 환불 시 납부기한 전으로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u>종전과 달리 세금을 납부할 필요 없이 세관에 부과 취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u> * [적용대상] 개인 자가사용물품 반품 환급(관세법 제106의2제1항), 국제무역선(기) 및 보세판매장 구입물품 반품 환급(관세법 제106조의2제2항)

< 사 례 >

개정전	여행자가 입국 시 자진 신고한 면세점 구매품을 세금 납부 전 환불하려는 경우에도 세금을 납부한 후 환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했다.
개정후	여행자가 보세판매장 구입물품을 입국시 자진신고 하여 국내 반입한 후 환불하는 경우 이미 납부한 세금에 관하여는 관세 환급을 신청하고, 납부기한 내 관세 납부 전이라면 해당 관세의 부과 취소 신청이 가능해졌다.

□ **【기대효과】** 세금 납부 후 환급 신청에 따른 납세자 불편 제거 및 관세 행정 효율성 제고

□ **【시행일】** '26. 4. 6. 시행

5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세원심사과, 042-481-787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세관장에게 신청하여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발급 *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 업체가 세관장에게 신청서* 제출하여 세관장이 심사 후 발급 * 증빙서류 첨부 ○ <신 설>	☐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 ○ (좌 동) ○ 세관장이 <u>자율발급업체로 지정한 업체는 증명서 자율발급 가능</u> - 자율발급업체는 증명서 내용을 관세청 전산설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직접 발급 * 증빙서류 첨부

< 사 례 >

개정전	수출업체 A사는 관세환급을 받기 위한 환급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매번 세관장에게 신청해야 해서, 신청서 제출, 세관 확인, 증명서 발급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었다.
개정후	세관장이 자율발급업체로 지정한 수출업체 A사는 세관장에게 별도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지 않아도, 환급관련증명서의 내용을 전산설비에 입력하는 방식으로 해당 증명서를 직접 발급할 수 있어 많은 시간과 노력을 줄일 수 있게 되었다.

☐ 【기대효과】 신속·간편한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발급을 통해 수출기업의 편의 제고

☐ 【시행일】 '26. 7. 1.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제12조의2, 제13조의2 신설)

6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통관기획과, 042-481-7825)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	□ 자가용 보세창고 반입 가능 화물 확대 ○ 운영인이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자가화물 외에 <u>자가화물이 아닌 선박·항공기 수리용 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추가</u>

< 사 례 >

개정전	선사·항공사가 적재 의뢰한 수리용 부분품 및 부속품이 공급업체 자가화물이 아닌 경우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 불가했다.
개정후	선사·항공사가 적재 의뢰한 수리용 부분품 및 부속품이 공급업체 자가화물이 아닌 경우라도 공급업체가 운영하는 자가용 보세창고에 반입 가능해졌다.

□ **【기대효과】** 선기용품 공급업체 불편 해소를 통한 선(기)용품 공급업체 업무 효율성 제고 및 공급업 활성화에 기여

□ **【시행일】** '26. 7. 1. 시행(「보세창고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3조 개정)

7 원산지 사전심사 신청 수수료 폐지

(원산지검증과, 042-481-3287)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원산지 사전심사 수수료 ☐ (수수료) <u>물품당 3만원 부과</u>	☐ 원산지 사전심사 수수료 완화 ☐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 - 물품당 3만원 부과 ☐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하지 않는 물품 - 무료

〈 사 례 〉

개정전	S사는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모든 물품에 각 3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다.
개정후	S사는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때 특별히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하지 않은 물품은 신청 수수료 납부 부담 없이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원산지 사전 심사에 대한 편의성이 제고되었다.

☐ **【기대효과】** 사전심사 이용을 활성화하여 수입기업의 안정적인 FTA 활용 지원

☐ **【시행일】** '26. 3. 20. 시행(「FTA관세법 시행규칙」 제31조 3항)

8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일회용 인증번호 제도 도입

(전자상거래통관과, 042-481-7918)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기재	□ 해외 전자상거래물품 주문 시 <u>일회용 인증번호 추가 기재</u>
○ <신설>	○ 전자상거래업자가 <u>주문자의 개인 통관고유부호 유효성을 관세정보 시스템에 검증요청하고 관세정보 시스템은 검증 후</u> 해당 수입화주에 <u>일회용 인증번호 발급</u>
○ <신설>	○ 통관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및 일회용 인증번호 불일치인 경우 접수 불가
	○ 협력인정업체*를 통한 주문 건 중 주 문자와 수하인이 동일한 경우 해당 업체에 일회용 개인통관부호와 인증 번호를 제공하여 주문자가 별도로 입력할 필요 없음
	* 회원 본인인증 등 관세청 요건을 만족하여 인정받은 업체

< 사 례 >

개정전	• A는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하면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작성 후 주문하였으나, 해외에 자신의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어 도용될 수 있다는 걱정을 하였다.
개정후	• 해외직구 물품을 구매할 때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일회용 인증번호를 작성 후 주문하게 되어 A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유출되더라도 안심할 수 있게 되었다.

□ **【기대효과】** 수입화주 정보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 목적에 기여

□ **【시행일】** '26. 8. 15. 시행 예정(「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 제13조에서 제15조 개정)

9 승객예약자료 미제출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관세청 관세국경위험관리센터, 042-481-3239)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승객예약자료 미제출 시 과태료 승객예약자료를 전부를 과실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 확대 승객예약자료를 과실로 일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u>미제출 항목 비율이 필수 제출항목(15개)의 10% 이상이면 과태료 부과</u>

< 사 례 >

개정전	A항공사가 제출해야 할 승객예약자료 중 과실로 일부 미제출하더라도, 과태료 부과대상에 해당하지 않았다.
개정후	A항공사가 제출해야 할 승객예약자료 중 과실로 10% 이상을 미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다.

☐ **【기대효과】** 우범여행자 선별에 필수적인 승객예약자료(PNR) 제출 정확도를 제고함으로써 마약·테러 등 관세국경 위험관리 강화

☐ **【시행일】** '26. 7. 1. 시행(「관세법」 시행령 별표 5 제3호나목, 「승객예약자료의 제공 및 이용에 관한 고시」)

10 소액화물에 대한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도입

(통관검사과, 042-481-7923)

종 전	달라지는 내용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통관보류 (관세법 제235조)	☐ 상표권 침해와 관련 소액화물 통관 환경에 맞는 <u>간이한 통관보류 절차 신설</u> (관세법 제235조의2)
○ (침해의심 물품) 권리자가 담보를 제공하고 통관보류등을 요청 ※ (절차) 통관보류 요청, 담보제공, 법원 제소사실 입증 등 7단계	○ (대상) <u>물품가격 미화 2,000달러 이하 특송물품, 미화 1,000달러 이하 우편물 등</u> ○ (절차) 3단계로 축소 ① 침해의심 사실 통보 ② 상표권자 침해 입증자료 및 수출입자 비침해 입증자료 제출 ③ 통관보류 여부 결정
○ (침해명백 물품) 세관장이 직권으로 통관보류	○ (현행과 같음)

〈 사 례 〉

개정전	A사(상표권자)는 다건의 소액화물이 A사 상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의심된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침해 의심 물품의 통관보류를 위한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비용 부담이 커 통관보류 요청을 포기하였다
개정후	소액의 상표권 침해 의심 물품에 대하여 담보제공 등 복잡한 절차 없이 신속히 통관보류 여부를 결정하여 A사 상표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기대효과】** 소액화물 통관 환경에 적합한 간이 통관보류 절차 신설로 상표권 보호 실효성 제고

☐ **【시행일】** '26. 4. 1. 시행(「관세법 시행령」 제243의2 신설)